

제 26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1.12.)

# 일 반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혜진]



# 목 차

1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1
---	--------------------------------	---



#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 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1. 4.

### 2.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군세를 감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 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나.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다. 감면내역

- 2023 주민세 면제 : 개인분, 사업소분(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2023 자동차세 면제 : 소유분
- 2023 재산세 면제 :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 라.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나. 행정안전부 시행“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공문서(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

다. 행정안전부 시행“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정 지원 운영기준  
알림”공문서(지방세정책과-4561호, 2022.11.7.)

## 5. 검토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함.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 10월 30일 선포하였음.
-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우리 군에 거주 중인 유가족은 없으나 유가족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거창군수가 제출한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 2. 감면내역

- 2023 주민세 면제 : 개인분, 사업소분(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2023 자동차세 면제 : 소유분
- 2023 재산세 면제 :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 3.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본 의결에 따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